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76
----------	------

2017년 9월1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25. 오승록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7. 8. 28.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오승록 의원)

#### 1. 제안이유

- 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이후 그 시행이 2017년 5월30일로 발효됨에 따라 상위법과 법령체계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계획의 수립 등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함.

## 2. 주요내용

- 가. 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제1조), 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지정  
(제2조)
- 나. 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함(제3조, 제4조)
-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12조)
- 라. 정신질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13조)
- 마. 기존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대상
- 다. 기 타 :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제정안의 취지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개정되고, 2017년 5월30일 로 발효됨에 따라, 제정안은 상위법과 법령체계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제정안은 상위법의 이념과 개정목적에 반영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제1조), 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지정하며(제2조), 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제3조,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12조), 정신질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3조), 기존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 제정안의 제정 사유

##### 가. 조례의 제정목적

- 제정안 제1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

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은 제1조에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제정안의 제정목적이 법률보다 더욱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조례가 상위법의 제정목적보다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자치입법의 핵심요소로 조례를 규정하고 이의 제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목적은 지역적인 특성과 정책목적은 고려한 자율적인 법적 규율과 탄력적인 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임.<sup>1)</sup>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목적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 제정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해당 전달체계의 확립, 재활 및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등의 조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의 보

1) 문상덕(2009) 자치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법제연구 37(1) 39-77.

호와 권리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에서는 시민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시장의 책무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 규정된 사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장의 각종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임. 다음으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2)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하는데 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조를 이기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타당한 제정안이라고 할 것임.

### 3 제정안의 주요 사업

#### 가. 지역계획의 수립

- 제정안 제5조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다루고 있으며, 제정안 제6조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을 다루고 있음. 이때 지역계획의 수립은 국가 계획과의 연결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계획과의 연결성도 가지게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의 연결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기로 제정사유가 타당하다 할 것임.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나. 정신건강사업의 추진관련

- 제정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안임.
- 제정안 제6조, 제7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체계를 구성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가 시장임을 명시하고 있는 안임. 따라서 제정안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해야 함.<sup>3)</sup> 또한 후술할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의 무도 제정안 제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음.

## 다. 전달체계 내 주요 시설에 대한 규정

- 제정안 제8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불리던 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재명명하고 사업의 내용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3)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제2항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 지원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보다 그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여겨질 것으로 예측됨.

- 제정안 제9조는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안으로 기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로 불리던 시설을 재명명하고 시설별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으나,
- 제정안 제9조제3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 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이며 현재 서울시의 일부 정신재활시설이 위기 지원을 위한 임시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음.

※ 정신질환자가 위기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위기개입과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임.

- 제정안 제10조는 정신건강복지사업단의 운영 세부방식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조항을 반영한 것인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제정안 제11조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sup>4)</sup>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제1호) 민간의 정신재활시설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임.(제2호)

---

4) 서울시 각 자치구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 라. 복지서비스의 제공

- 제정안 제12조는 시장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추후 서울시 집행부 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용임.
  - 제정안 제13조는 제정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 필수적인 내용과 확대가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음.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의 이념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 조례 제정안에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역사회에의 거주 및 치료와 재활 정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이 외의 복지서비스로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추가적으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제정안 제12조와 제13조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단순보호, 단순보호고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효과성을 가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마.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 제정안 제14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음. 지체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과는 달리 정신장애인은 당사자단체가 체계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임. 당사자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에 관의 금전적인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존재할 수 있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와 같은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짐.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 짐.

#### 4 부칙과 관련하여

- 제정안 중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여 2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안임.
- 먼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외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이며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기관과 서비스의 명칭이 변화하였고 서비스 제공에의 철학이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입원시키는 것이 아닌 탈원화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서울시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또한, 기존 서울시 조례가 1개 상위법령을 복수의 조례로 분리해 놓았던 점 등은 기존조례의 폐지사유로 적절하다 할 것임.

## 5 종합의견

- 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임. 제정안은 앞서 살펴보면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충실하며 지방자치 고유의 특성에 맞춘 조례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제정안이 위임조례의 성격을 가짐에도 조례제정의 목적에서도 상위법의 목적과 서울시의 사업성격을 반영하여 자치조례적인 성격을 가지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짐.
- 제정안과 관련하여 표준조례안이 없는 상황이나, 추후 표준조례안 등의 하달이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안으로 현 시점에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인 적절성을 가진다고 할 것임.
- 조례의 제정은 자치입법의 핵심요소로 지역적 특성과 정책목적을 반영한 자율적인 법적 규율과 탄력적인 법의 제정이 목적인 바 제정안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은 자치입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점 등을 볼 때 제정안의 안건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 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

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 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 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④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통 등을 지

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들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 2.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 3.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4.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의 현황과약 및 통계
- 5.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